#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90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강선우 · 위성곤 · 임오경

서미화 · 전현희 · 김동아

김 윤・진성준・천준호

김윤덕 · 조승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① 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 · 검사를 실시한 경 우에는 시험 · 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 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시험・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 급할 수 있다.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신 설> 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 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u>수 있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